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16
----------	------

제출년월일 : 2008.11. .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안산시 의회 제158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중, 제16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의결되었고,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조직개편 지침 이행을 촉구하면서 당초 지침에서 유연성을 인정해 줌에 따라 조직개편을 재 추진하고자함.

주요골자

- 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일반구 감사기능(청문포함)을 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안 별표 2).
- 나. 가족여성과 노인복지담당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2). -자체감사 권고 사항임-
- 다.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민방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안 별표 2).
- 라. 건축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행정조치에 관한 위임 사무 중 단서조항 “단, 7 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제외”를 삽입 - 법제처 법리해석, 국토해양부 공문지시(안 별표 2).
- 마. 교통기획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 시장님 방침결정(2008. 5. 26.).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별첨(의견 1건, 미반영)
 - 입법예고 : 2008. 10. 31. ~ 11. 10.(10일간)
 - 미반영 의견 : 상업지역 건축물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건축과→구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감사담당관실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스포츠마케팅과, 지구환경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및 교통기획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 과장 직위 성명	총무과장 김 상 일
	담당 팀장 직위 성명	조직교육담당 전덕주
	담당자 성명 전화	김진표 (☎3108)

[별표 2]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문화 관광과	1. 게임 ·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 련업에 관한 음의 권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구청장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3.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4. 노래연습장업 등록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7. 신고증 · 등록증 ·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8. 신고 · 등록 · 허가사항의 변경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9. 영업의 승계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문화 관광과		10. 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구청장
		11. 사후관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12. 허가 취소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13. 행정처분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14. 과징금의 부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6. 폐쇄 및 수거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17. 과태료 부과 · 징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18. 게임을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 교육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19.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20.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시설 입소 의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	구청장
	2.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2. 급여의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제34조	
		3. 급여신청(변경)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3.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7조	
	4. 기초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터 제24조	
	5.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지원대상자 현장조사	• 긴급지원법 제8조	
		2.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 긴급지원법 제13조	
6.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1.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부터 제14조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터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7. 행려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리	1. 행려환자 관리	1. 행려환자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8.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리	1. 장애수당 지원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한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구청장
	10.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업무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13. 공중위생영업,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4. 보고 및 출입 검사 5.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6. 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7. 과징금 처분 9.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10. 위생교육 11.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1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 (5) 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의 식 품 접 각 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2. 영업의 폐업 신고 3. 영업허가등의 제한 4. 영업의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제2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식품위생법 제24조 · 식품위생법 제25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사 회 복지과	15. 집단급식소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집단급식소 신고	• 식품 위생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구청 장
	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점 객업, 집단급 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출입, 검사, 수거 등 2. 건강진단 3. 위생교육 4. 위생등급 5.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의 개수명령등 6. 협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없음) 7. 포상금 지급 8. 벌칙사항 9.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식품위생법 제26조 • 식품위생법 제27조 • 식품위생법 제32조 • 식품위생법 제55조 및 제57조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2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 식품위생법 제74조 부터 제77조 • 식품위생법 제78조	
	17.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2. 노인교통수당 지급 3. 노인 장수수당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 노인복지법 제26조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18.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노인복지법 제4조	
	19.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20.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21.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22.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노인복지법 제4조	
	23.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 련 법령	수임기관
사회 복지과	2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동장
	25.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2.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26.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2. 공설매장·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매·화장 납골 증명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4.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징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27.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가 족 여성과	8.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 설치인가 2. 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 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9.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2. 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3. 보육시설의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부터 제2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부터 제4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부터 제39조	
	10.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11.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부터 제9조	
	12.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조사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동장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스포츠 마케팅과	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5. 수수료 징수 6. 벌칙및양벌규정에의한 조치 7. 과태료 처분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2조제2항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38조, 제39조 · 같은법 제40조	구청장
	2. 운동장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승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지 구 환경과	1. 운행차의 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제1항	구청장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 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3. 운행차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	
		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16조	
		3.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허가 및 허가의 취소 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 8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	
		4.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	
		5.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	
		6.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수리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7. 생활소음·진동발생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8.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및 조치	·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	
		9.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10. 교통소음·진동 규제 지역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청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11.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13. 과태료의 부과	·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재난 관리과	1. 재해재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2. 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구청장
	2.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2.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자료 집적 3. 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 풍수해보험법 제33조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행정조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7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제외)	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 시행	• 건축법 제7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행정 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내 상가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 감독)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1조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 신고 및 사용승인(상업지역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 허가신고전 총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3. 건축물 허가 ·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1.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5.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건축법 제38조	
	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교통 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	구청장
		2. 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분할납부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4. 가산금 및 독촉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처리	• 주차장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공영주차장 (노외·노상· 임시) 관리 및 유지보수 ※ 유료주차장 제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시 부 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 제19조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 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 제29조, 제32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하는 사무(제2조관련)					[별표 2] 구청장·동장에게 하는 사무(제2조관련)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감사담당관실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구 및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감감사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회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삭제>	<삭제>	
		3. 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	<삭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문화 관광과	1. 게임·음악 산업 및 비 디오물 관련 업에 관한 다 중의 권한	1.~6.(생략)	(생략)	구청장	문화 관광과	1. 게임·음악 산업 및 비 디오물 관련 업에 관한 다중의 권한	1.~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7.(생략)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5항, 통 별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별 시 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60 조, 통별 시행 규칙 제19조				7.(현행과 같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5항, 같 은법별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 조,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 조	
		8.~14(생략)	(생략)				8.~1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청문	·게임산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40조, 음 악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30조				15. < 삭제 >	<삭제>	
		16.~20.(생략)	(생략)				16.~20(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사회 복지과	1.~5.(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사회 복지과	1.~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6.(생략)	1.(생략)	(생략)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생략)	(생략)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내지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u>돌봄 시행령</u> 제2조 및 제3조			3.(현행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단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u>돌봄 시행령</u> 제2조 및 제3조	(현행과 같음)			
	7.(생략)	(생략)	· 의료급여법 제3조 · <u>돌봄 시행령</u> 제2조			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제3조 · <u>돌봄 시행령</u> 제2조			
						8.~10(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관한 규정	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삭제>	<삭제>	<삭제>			
		(생략)	(생략)			1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생략)	1.~7.(생략)	(생략)			13.(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삭제>	<삭제>			
		9.~11(생략)	(생략)				9.~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생략)	(생략)	(생략)			1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생략)	(생략)	· 식품 위생법 제69조 · <u>돌봄 시행규칙</u> 제58조			1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식품 위생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16.(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 식품 위생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16.(생략)	1.(생략)	· 식품 위생법 제17조 · <u>돌봄 시행규칙</u> 제12조, 제13조				2.~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생략)	(생략)				6. 허가취소, 폐쇄 조치 등, <삭제>, 행정처분사실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없음)	(현행과 같음)			
		6. 허가취소, 폐쇄 조치 등, <u>돌봄 시행규칙</u> 제12조, 제13조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없음)	(생략)				7.~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정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사회 복지 과	17.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구제회		
		<신설>	<신설>			2. 노인교통수당 지급	· 노인복지법 제26조				
		<신설>	<신설>			3. 노인 장수수당 지급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신설>	<신설>	<신설>		18.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 무료급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노인복지법 제4조				
	<신설>	<신설>	<신설>			19.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기조			
	<신설>	<신설>	<신설>		20. 경로당 신고수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신설>	<신설>	<신설>			21.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2.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신설>				22. 경로당 우자관리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노인복지법 제4조				
	<신설>	<신설>	<신설>		23.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활동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신설>	<신설>									
사회 복지 과	17.(생략)	(생략)	(생략)	동장	사회 복지 과	24.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동장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8.(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동별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25.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9.(생략)	(생략)	(생략)		26.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신설>	<신설>	<신설>		27.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자동차 표 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가 족 여성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구청장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노인교통수당 지급	· 노인복지법 제26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노인 경수수당 지급	· 안산시 노인경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시험	1. 무료급식설정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노인복지법 제4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시험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2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시험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노인복지법 제4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길은법 시행규칙 제5조		
	7.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활동난방비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길은법 시행규칙 제5조		
	8.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험	1. 보육시설 설치인가 2. 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 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돌봄 시행규칙 제5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돌봄 시행규칙 제5조	동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 17조 부터 제21조 · 길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9.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2. 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3. 보육시설의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부터 제21조 · 돌봄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돌봄 시행령 제24조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내지 제49조 · 돌봄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9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길은법 시행령 제24조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10.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학정 및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부터 제49조 · 길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부터 제39조		
	11.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 돌봄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0조 · 돌봄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 돌봄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동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아동복지법 제10조 · 길은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10조 · 길은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5조 · 길은법 시행규칙 제7조 부터 제9조		
	12.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조사 및 시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스포츠 마케팅과	1.(생략)	1.~3(생략)	(생략)	구청장	스포츠 마케팅과	1.(현행과 같음)			구청장
		4.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	같은법 제33조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7(생략)	(생략)			<삭제>	<삭제>		
	2.(생략)	(생략)	·안산시 체육 시설관리 운 영조례			5.~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조 및 제4조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산시 체육 시설관리 운 영조례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지구 환경과	1.(생략)	1.~3.(생략)	(생략)	구청장	지구 환경과	1.(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2.(생략)	1.~11(생략)	(생략)			2.(현행과 같음)	1.~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행정처분에 따른 질문	· 소음 · 진동 규 제별 제51조			<삭제>	<삭제>		
		13.(생략)	(생략)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 분	위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재 난 관리과 다 름 의 관할	1. 민방 위업무 에 관 한 2. 민방위대원 세부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u>직장민방부대 및 민방위 기술지원 내외 (통합)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 변경</u> · <u>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 2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제 21조</u> · <u>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4조</u>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직장 민방위대원의 교 육훈련 통지서의 작성 및 전달	· <u>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00 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 대원의 교육 훈련연제대상자승인	· <u>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 조</u> · <u>같은법시행규칙제37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 술지원대원의 교육 훈 련 룰침자 조치	· <u>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 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 지휘 감독	· <u>민방위기본법 제11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직장민방위대 검열	· <u>민방위기본법 제22조</u> · <u>같은법 시행령 제29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원의 동원 및 유예	· <u>민방위기본법 제35조</u> · <u>같은법 시행령 제35조</u> · <u>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내 지 제43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민방위의무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u>민방위기본법 제39조</u> · <u>같은법 시행령 제59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 정·관리 및 대피시설 안내표지	· <u>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6조</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재난 관리과	2. 재해재난관리업 무에 관한 다음 의 권한	(생략)	(생략)	구 청 장	재난 관리과	1. 재해재난관리업 무에 관한 다음 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청 장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풍수해보험업무 에 관한 다음의 권 한	(생략)	(생략)		2. 풍수해보험업무 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련법령	수임기 관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2. (생략) 3. (생략) 4. (생략)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행정조치사무 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 6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 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 69조 · 건축법 제69조의2 · 건축법 제 78조 · 건축법 제 80조 · 건축법 제 83조 	
	2.(생략)	(생략)	(생략)	
	3.(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7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4.(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5조 	
5.(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5조 	
6.(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구 분	위 임 사무 명	단 위 사무 명	관련법령	수임기 관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행정조치사무 에 관한 다음의 권 한(단, 7층이상 연 면적 2천제곱미 터 초과 제외)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 7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 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법 제 2조 · 건축법 제 79조 · 건축법 제 80조 · 건축법 제 106조 부 터 건축법 제111조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0조 	
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0조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09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수임기관
교통 기획과	1.~2.(생략)	(생략)	(생략)	구청장	교통 기획과	1.~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청장
	<신설>	<신설>	<신설>			3.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 적 2천 세곱미터 이 하인 건축물의 건 축·대수선·용도변 경에 관한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 부설 주차장 검토 및 협 의에 관한 사항	주지상법 제19조	
	<신설>	<신설>	<신설>				2. 6층 이하로서 연면 적 2천 세곱미터 이 하인 건축물 부설주 차장 용도변경에 관 한 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신설>	<신설>	<신설>				3. 6층 이하로서 연면 적 2천 세곱미터 이 하인 건축물 부설주 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에 관한 사항	주차상법 제29조, 제32조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76
----------	------

제안년월일 : 2008. 12. 1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조직개편에 있어 준비 기간 등이 필요하여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부칙 시행일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2월 10일부터”로 수정함.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시행일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2월 10일부터”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이 조례는 <u>2009년 2월 10일부터</u> 시행한다.